



4월 8일(일) 14:00 이후 사용

비고

브리핑 : 4. 6(금) 11:00, 정부세종청사, 규제혁신기획관

담당

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혁신과

과장 최용선, 서기관 유호
(044-200-2435, 2917)

학교 내 기숙사 건축제한 완화, 위생용품 제조업 시설기준 완화

▶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·입지 규제 38건 정비

- 학교 내 기숙사 건축제한 완화 등 주민·이용자 편의 개선 24건,
위생용품 제조업 시설기준 완화 등 생활편의업종 활성화 14건

▶ 앞으로도 국민불편 해소 위해 △온라인 거래·활용 저해 규제
△국공유지 활용 저해 규제 △관광·숙박 불편 규제 등 지속 혁파 추진

□ 국무조정실(국무조정실장 홍남기)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「국민불편 영업·입지 규제 정비방안」을 발표했습니다.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‘영업장 이용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규제정비’를 지시(17.12.26, 국무회의)한 바 있습니다.

○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3대 규제혁파 분야*의 하나인 ‘국민불편 해소’의 우선과제로 영업·입지 규제 정비를 추진했습니다. 작더라도 국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.

* 2018년 규제혁파 중점추진 분야 : ①미래 신산업 ②일자리 창출 ③국민 불편·민생부담 해소

□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영업 범위·요건 관련 규제, 각종 입지·행위제한 규제 중 민원·언론 지적사항, 지자체 건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과제를 선정·검토하였고, 그 결과 38건을 정비하기로 확정했습니다.

○ 유형별로는 ‘주민·이용자 편의 개선’ 24건*, ‘생활편의업종 창업·영업 활성화’ 14건**입니다.

* 주민·이용자 편의 개선(24건) : 편의·수익 시설 입지 확대 (11건), 이용 제한 및 불편사항 개선 (13건)

** 생활편의업종 창업·영업 활성화(14건) : 영업 요건 완화(9건), 영업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(5건)

□ 이번 영업·입지 규제 정비방안의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그동안 금지·제한되었던 편의·수익 시설 설치가 가능해집니다.

◆ 학교 기숙사 건축면적 제한 완화 (국토부)

현행 대학 기숙사가 부족한 실정임에도 학교 밖 기숙사는 법적 용적률을 **최대한도(250%)**까지 허용*하도록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으나, 학교 내 기숙사는 제외(서울시 조례200%) → 기숙사 수용률 저조

* 공익재단 등의 학교 밖 기숙사 설립 지원을 위해 시행 : 국토계획법 150~250%, 조례 200% 이하 → 학교 밖은 250%까지 가능, 학교 내는 200%

개선 학교 내 기숙사도 법적 용적률 **최대한도**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 → 대학생의 기숙사 이용기회 확대 ☞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

효과 학교 내 기숙사 증·개축시 **추가 학생수용*** 가능

* ○○대 기숙사의 경우 250% 용적률 적용시 300여명 추가 수용 가능 (700여명→1,000여명)

◆ **자연공원내 주민생활시설 설치 확대 (환경부)**

현행 자연공원(국립·도립·군립공원 등)내 건축제한(입지, 대상·면적 등)이 일률적으로 규정 → 도립·군립공원에도 국립공원과 같은 엄격한 행위제한 적용으로 인근의 개발·지역민 편의 저해

* 주민거주가 많은 군립공원 인근은 대규모 농수산물 보관·판매시설이 필요하나 면적·층고 제한이 국립공원 동일하게 600m²/2층 이하로 제한

개선 도립·군립공원내 행위제한(입지·건축제한)은 지역특성에 맞게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☞ 자연공원법 개정

* 다만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또는 환경부장관 협의 절차 등 안전장치 마련

효과 56개 도립·군립공원내 주민 생산·편의시설 확대* 가능

* 농수산물보관시설·작물재배시설·초등학교·공중화장실 면적 확대 등

◆ **개발제한구역내 노인요양병원 증축 허용 (국토부)**

현행 고령사회화로 노인요양병원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, 개발제한구역내 노인요양병원 증·개축 및 신축 불가

개선 기존 노인요양병원의 증축 허용 ☞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

효과 개발제한구역내 5개 노인요양병원 시설개선 및 증축 가능

◆ **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에 신규업종 입주 허용 (국토부)**

현행 산업시설용지 입주 가능 시설을 제조업·전기통신업 등 25개 업종으로 제한하여 새롭게 출현·성장하는 신산업 업종* 입주 불가

* 여론조사업, 무형재산권 중개업,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등

개선 입주 대상 시설에 다양한 업종 추가 ☞ 입주허용 시설 고시 개정

효과 1,190여개(670km²)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에 신규업종 입주 가능

② 각종 편의시설 이용제한이 완화되고 아파트 청약 등에 대한 불편 사항이 개선됩니다.

◆ **청소년수련원 일반인 개별숙박 허용 (여가부)**

현행 청소년수련원 숙박은 △ 청소년 △ 법인·직장 단체(연수활동)*만 가능하고 개별·가족단위의 이용은 불가

* 공실 활용을 위해 수용인원의 40%이내에서 연수목적 일반인 단체숙박 허용

개선 40% 범위내에서 개별숙박도 허용 ☞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

효과 청소년수련원(189개) 이용확대로 숙박시설 부족 지역의 관광객 편의 제고, 특히 주말·비수기시 일반인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

◆ **아파트 특별공급 절차 간소화 (국토부)**

현행 아파트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이 가능하나 신혼부부·다자녀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등 현장에서만 가능

개선 특별공급(연간 6만여명)도 인터넷 청약 허용 ☞ 주택공급규칙 개정

효과 특별공급 대상자의 청약신청을 위한 장시간 현장 대기 등 불편해소

◆ **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(해수부)**

현행 무인도서*(절대보전·준보전)에서는 재난대응 목적 외에 개발행위 금지

* 무인도서 : 절대보전(147), 준보전(618), 이용가능 등(2,111)

개선 생태복원·산책로 설치 등 공공목적 사업, 기존 건축물 개·보수 등 허용 → 이용자 편의 증진, 생태교육 기회 확대 ☞ 무인도서법 개정

③ 생활편의업종 창업이 쉬워지고 영업 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됩니다.

◆ **시설경비업 인력기준 완화 (경찰청)**

현행 시설경비업은 통상 5명 내외 인력이면 운영이 가능하나, 허가시에는 20명 이상 인력기준에 따라 시설·장비 구비 필요

개선 허가요건을 5명 이상으로 변경(그에 따라 시설·장비 구비) → 소규모 창업 기회 확대, 시설·장비 구입비용 절감 ☞ 경비업법 개정

효과 신설 시설경비업체별(연평균 180여개) 평균 460만원 절감 효과

◆ **사물인터넷 적용 식육자동판매기 영업신고 개선 (식약처)**

현행 동일 형태의 다수의 사물인터넷 적용 식육자동판매기*를 설치하여 영업할 경우 각각 영업신고가 필요하여 영업자 불편

* '17.11월부터 보급중(현재 2대), 2020년까지 2,000대로 확대 예정

개선 식품자동판매기(커피자판기 등은 일괄신고 가능) 사례 등을 고려하여 일괄 영업신고 허용 ☞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

효과 판매기당 약 3일의 영업신고 소요시간 절감 가능

◆ **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 수행주체 확대 (농식품부)**

현행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은 마을협의회나 어촌계만 수행 가능

개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*도 가능하도록 개선 ☞ 도농교류법 개정

* 농촌자원을 이용한 제조업·서비스업 등을 융복합하여 제공하는 사업자, (예시)포도농가가 와이너리 운영(와인제조), 와이너리내 음식점 운영을 병행

효과 최대 400여개(현재 600여개)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 추가조성 가능

◆ **위생용품 제조업 시설기준 합리화 (식약처)**

현행 위생용품(1회용 컵·수저 등) 제조업자는 기본기계·기구류·설비 등 일정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일부는 제조에 불필요*

* 1회용 물컵 제조시 왁스코팅기 설치 → 대부분은 코팅된 종이를 구입하여 제조

개선 불필요한 고가장비 설치의무를 없애 영업자가 필요설비를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개선 → 중소기업인 부담 경감

☞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제정

□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정비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.

○ 대통령령 이하 규정 정비는 상반기까지, 법률 정비는 하반기까지 이행할 계획입니다.

□ 국무조정실은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·입지 규제 외에도 △ 온라인 거래·활용 저해 규제(2분기) △ 국공유지 활용 저해 규제(3분기) △ 관광·숙박 불편 규제(4분기) 등을 지속적으로 혁파해 나갈 계획입니다.

1. 주민·이용자 편의 개선 (24건)

① 편의·수익시설 입지 확대 (11건)

| 연번 | 과제명 | 정비내용 | 조치사항 | 완료시한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1 | 학교 기숙사 건축면적 제한 완화 (국토부) | 현행 학교 밖 기숙사는 용도지역별 법령상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허용되나, 학교내 기숙사는 조례로 용적률 제한시 이를 적용 개선 학교 내 기숙사도 최대한도까지 허용 |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| '18.6월 |
| 2 | 자연공원내 주민생활시설 설치 확대 (환경부) | 현행 자연공원(국립·도립·군립공원 등)내 건축 제한(입지, 대상·면적 등)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도립·군립공원 인근의 개발·편의 저해 개선 도립·군립공원내 입지·건축 제한범위를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개선 * 다만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또는 환경부장관 협의 절차 등 안전장치 마련 | 자연공원법 개정안 국회제출 | '18.10월 |
| 3 | 개발제한구역내 노인요양병원 증축 허용 (국토부) | 현행 개발제한구역내 노인요양병원 증·개축 및 신축 불가 개선 개발제한구역내 노인요양병원 증축이 가능하도록 토지형질변경 허용 |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| '18.12월 |
| 4 |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에 신규업종 입주 허용 (국토부) | 현행 산업시설용지 입주 가능 시설을 제조업 등 25개 업종으로 제한하여 새롭게 출현·성장하는 업종(여론조사업, 무형재산권 중개업 등) 입주 불가 개선 입주 대상 시설에 다양한 업종 추가 |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개정 | '18.12월 |
| 5 | 공공업무시설 농지전용허가 제한면적 상향 (농식품부) | 현행 계획관리·도시지역·개발진흥지구 외의 지역에서 공공업무시설을 위한 농지전용 허가는 1,000㎡ 이하로 제한 개선 주민편의 확대를 위해 자치센터·소방서·도서관 등 공공업무 시설에 대해 농지전용 허가 제한면적 상향(1,000㎡ → 3,000㎡) | 농지법 시행령 개정 | '18.5월 |
| 6 |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실 설치기준 완화 (복지부) | 현행 어린이집의 보육실은 1층에만 설치 가능 개선 공동주택 관리동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시 2층에도 보육실 설치 허용,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공공업무시설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2층~5층 이하에 보육실 설치 허용 |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| '18.2.28 조치 |
| 7 | 청소년수련 시설의 복합시설 설치 제한 완화 (여가부) | 현행 청소년수련시설은 다른 용도와 복합 시설로 설치 불가 개선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용도의 시설과는 복합시설로 설치 가능 |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| '18.10월 |

| 연번 | 과제명 | 정비내용 | 조치사항 | 완료시한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8 | 개발제한구역내 공공기관의 야영장 등 설치 허용 (국토부) | 현행 개발제한구역내 야영장·잔디광장 등은 국가·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 개선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야영장 등의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내 입지 허용 |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| '18.12월 |
| 9 | 연구개발특구내 건축행위 규제 완화 (과기정통부) | 현행 완충저류시설 등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은 대부분의 지구에서 입지가 가능하나 연구개발 특구에서는 제한 개선 연구개발특구내 녹지구역 등에 완충저류 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 등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|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 | '18.6월 |
| 10 | 보전산지내 산림복지단지 조성 허용 (산림청) | 현행 보전산지내에 자연휴양림·치유의 숲 등 개별 산림공익시설만 설치 가능하나 시설이 종합된 산림복합단지는 설치 불가 개선 보전산지내에 휴양·문화·치유 등의 복합시설인 산림복지단지 설치 허용 |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| '18.6월 |
| 11 | 수상·육상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기준 간소화 (국토부) | 현행 환경훼손이나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수상태양광 및 개발행위허가 완료된 건축물 위에 태양광설비 설치에도 다른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동일한 기준 적용 개선 수상태양광 및 기존건축물 위 태양광에 대해 시설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 간소화 | 공문시행 | '18.1.29 조치 |

② 이용 제한 및 불편사항 개선 (13건)

| 연번 | 과제명 | 정비내용 | 조치사항 | 완료시한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1 | 청소년수련원 일반인 개별숙박 허용 (여가부) | 현행 청소년수련원 숙박은 △ 청소년 △ 법인·직장 단체(연수활동)만 가능하고 개별·가족단위의 이용은 불가 개선 청소년수련원의 일반인 개별숙박 허용 |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국회제출 (법률 개정) | '18.12월 ('19.6월) |
| 2 | 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(해수부) | 현행 무인도서(절대보전, 준보전)에서 재난·군사 목적 외에 개발행위 금지 개선 생태복원·산책로 설치 등 공공목적 사업, 기존 건축물의 개·보수 등은 가능토록 개선 | 무인도서법 개정안 국회제출 | '18.8월 |
| 3 | 아파트 특별공급 절차 간소화 (국토부) | 현행 아파트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이 가능하나 신혼부부·다자녀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등 현장에서만 가능 개선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신청 허용 | 주택공급규칙 (부령) 개정 | '18.4월 |
| 4 | 농작물재해 보험업 적용 대상품목 확대 (농식품부) |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사과·배 등 53개로 제한 개선 메밀·브로콜리·양송이버섯등 재해에 취약한 4개 발작물 추가 | 농업재해보험 고시 개정 | '18.5월 |

| 연번 | 과제명 | 정비내용 | 조치사항 | 완료시한 |
|-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5 | 상호금융업이 제공할 수 있는 신용사업 부수업무 확대 (금융위) | 현행 신탁·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업무범위가 제한되어 공과금 수납, 민간 상품권 판매, 전자상거래 지급대행 등의 영업 곤란 * 공과금·관리비 수납은 명시규정은 없으나 관련규정 해석을 통해 영업 허용중 개선 상호금융업의 부수업무 범위에 공과금 수납, 민간 상품권 판매, 전자상거래 지급대행 등을 허용·명시 |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| '18.12월 |
| 6 | 보험사무대행 기관의 업무범위 확대 (고용부) | 현행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경우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주로 제한되어 기타 사업주 이용 곤란 개선 보험사무 대행을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 범위 폐지 |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 | '18.6월 |
| 7 |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 (법무부) | 현행 변호사시험을 서울, 대전에서만 실시, 그 외 지역 거주 응시자는 시험기간(5일) 동안 숙소 확보 필요 개선 변호사시험 장소를 서울·대전 외 다른 지역으로 확대 | 변호사시험 관련 공고 | '18.12월 |
| 8 | 산지전용허가 기준(개간) 완화 (산림청) | 현행 산지를 농지로 전용시에는 현황도로가 있어야만 산지전용 가능 개선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 전체가 농지로 둘러싸여있는 경우 현황도로 없이 산지 전용 허용 | 산지전용시 기준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(고시) 개정 | '18.3월 |
| 9 | 농지의 임대차 허용사유 확대 (농식품부) | 현행 농지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나, 60세 이상 은퇴농, 질병·징집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(8개 항목) 개선 농지임대차 허용 사유 조정 | 농지법 개정안 국회제출 | '18.11월 |
| 10 | 신규 문화재 돌봄단체 지정시 지역제한 완화 (문화재청) | 현행 문화재의 일상관리와 정기모니터링을 하는 돌봄단체 지정시 지역을 제한(해당 시도내 등록 단체) 등으로 제한 개선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단체 지정시 지역제한을 완화(타시도 허용) | 문화재돌봄사업 운용규정(훈령) 개정 | '18.6월 |
| 11 | 하천관련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장 강화 (국토부) | 현행 홍수관리구역내 행위허가 완화 필요, 하천구역내 토지활용 제한 개선 홍수관리구역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하천구역내 토지활용도 제고 | 하천법 개정 | '18.12월 |
| 12 |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현상변경 허가 관련 주민 불편 완화 (문화재청) | 현행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내 문화재청장이 아닌 지자체장 허가사항인 경미한 건축 행위 등의 범위가 제한, 보전지역내 건축 제한이 문화재 특성 고려없이 일괄 설정 개선 시·군·구청장의 허가사항인 '경미한 행위' 확대(1,500㎡ 미만 수목식재 → 3,000㎡ 미만 등), 문화재 유형을 고려하여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합리화 |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, 관련 고시 개정 | '18.12월 |
| 13 | 전자파일 등록증 도입을 통한 특허권자의 편의 제고 (특허청) | 현행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시 서면등록증을 권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교부하고 재교부 신청시에 신청료를 받고 재교부 개선 특허권자 등의 신청시 등록증을 전자 파일로 교부하여 권리자가 필요시 수시로 출력하여 사용 | 특허법 시행규칙, 상표법 시행규칙 등 개정 | '18.8월 |

2. 생활편의업종 창업·영업 활성화(14건)

1 영업 요건 완화(9건)

| 연번 | 과제명 | 정비내용 | 조치사항 | 완료시한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------|
| 1 |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 수행주체 확대 (농식품부) | 현행 농어촌체험마을·휴양마을사업은 마을 협의회나 어촌계만 사업 수행 가능 개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도 허용 | 도농교류법 (국회계류중) 개정 | '18.12월 |
| 2 | 시설경비업 인력기준 완화 (경찰청) | 현행 시설경비업 허가시 20명 이상의 인력 기준에 따라 시설 및 장비 구비 필요 개선 시설경비업 허가시 5명 이상의 인력 기준에 따라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 | 경비업법 개정 | '18.6월 |
| 3 | 위생용품 제조업 시설기준 합리화 (식약처) | 현행 위생용품(1회용품 등)제조업자는 기본기계·기구류·설비 등 법령에 규정된 장비를 설치해야 하나, 일부는 제조에 불필요 개선 기본기계·기구류·설비 등 의무설치 목록을 삭제하여 영업자가 필요 설비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|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* 현행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 | '18.4월 |
| 4 | 미용업 시설·설비기준 완화 (복지부) | 현행 피부미용업소는 미용업소의 구비요건 외에 특정설비(온장고·사물함 등)를 추가의 갖추도록 규정 개선 피부미용업소도 소독장비 외의 설비장비는 자율적으로 갖추 수 있도록 개선 |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| '18.9월 |
| 5 |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업 영업기준 완화 (경찰청) | 현행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업 지정요건은 특·광역시 지역의 경우 40대 이상, 시·군 지역의 경우 20대 이상의 주차시설 필요 개선 특·광역시 지역은 30대 이상, 시·군 지역은 15대 이상 주차시설로 지정요건 완화 |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| '19.6월 |
| 6 | 유료직업소개 사업 겸업금지·등록요건 완화 (고용부) | 현행 직업소개사업은 식품접객업·숙박업 전면 겸업 금지,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 직업상담원 고용(1명 이상) 및 대표자 직업상담사 자격 필요 개선 식품접객업·숙박업 중 일부업종에 한해 겸업을 금지, 대표자 자격 요건 폐지 | 직업안정법 개정안 국회제출,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 | '18.6월 |
| 7 | 목재제품 규격·품질검사 자격 기준 완화 (산림청) | 현행 목재제품 규격·품질검사는 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공장에서만 가능 개선 지정 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공장 이외에도 목재등급평가사가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 | 목재이용법 개정 | '18.6월 |
| 8 |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 확대 (산림청) | 현행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의 수행자를 관계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산림조합·공공기관·대학 등으로 한정 개선 공동산림사업 수행자에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 추가 |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 | '18.9월 |

| 연번 | 과제명 | 정비내용 | 조치사항 | 완료시한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|--------|
| 9 |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 (해수부) | 현행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이 공기업, 공공기관 등으로 제한 개선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 등을 갖춘 민간 기업으로 시설사업 시행자격을 확대 | 해수욕장법 개정안 국회제출 | '18.6월 |

② 영업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(5건)

| 연번 | 과제명 | 정비내용 | 조치사항 | 완료시한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1 | 축산물 영업신고 중복규제 해소 (식약처) | 현행 축산물판매업,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자가 포장된 상태의 축산물을 그대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시에도 판매하는 축산물별 별도 영업신고 의무 * 식육판매업(포장된 닭·오리), 식용란수집판매업(달걀) 등 개선 포장된 상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개별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인정 |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| '18.4월 |
| 2 | 사물인터넷 적용 식육자동판매기 영업신고 개선 (식약처) | 현행 동일한 다수의 사물인터넷 적용 식육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영업할 경우 장소마다 영업신고가 필요하여 영업자 불편 개선 식품자동판매기(커피자판기 등, 일괄신고 가능) 사례 등을 고려하여 일괄 영업신고 허용 |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| '18.10월 |
| 3 |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절차 간소화 (식약처) | 현행 건강기능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시 관련 서류 외 양도인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개선 구비서류에서 인감증명서 삭제 |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| '18.10월 |
| 4 |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차량 밀폐기준 개선 (환경부) | 현행 1톤 이하의 생활폐기물 또는 유출우려가 없는 액상생활폐기물도 밀폐형 차량으로 운송토록하여 불편 개선 종량제봉투로 배출된 폐기물을 1톤 이하 차량으로 운반시 밀폐덮개설치차량으로도 취급할 수 있도록 개선 |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| '18.10월 |
| 5 | 약국 승계 신고 절차 간소화 (복지부) | 현행 제조업자, 판매업자의 경우 지위승계 규정이 있으나 약국개설자는 관련 규정이 없어 개설자 변경시 약국폐업 후 신규 개설 필요 개선 약국 개설자간 지위승계 규정 신설 | 약사법 개정안 국회제출 | '18.7월 |